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44

발의연월일: 2024. 12. 3.

발 의 자:김우영·송재봉·문금주

김문수 · 김성환 · 양문석

조계원 • 윤종군 • 박홍배

정동영 • 박민규 • 이광희

김남희 · 채현일 · 김동아

차지호 • 박주민 의원

(1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이하 "연차평가"라 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관리·감독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2021년 연차평가 제도가 연구자의 평가·행정 부담 가중을 이유로 폐지되었으나, 최근 연구개발과제의 적절성과 예산 사용의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연구개발성과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장기 연구개발과

제의 경우, 현재 단계 종료 시점에서만 평가하는 단계평가 방식으로는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성과 저하, 예산 낭비, 연구 윤리 문제 등을 즉 각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연차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3항및 제14조제1항).

법률 제 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단계평가"를 "연차평가(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 제의 수행에 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계평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계평가"를 "연차평가, 단계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단계평가"를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단계평가"를 "연차평가, 단계평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의 연차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① (생 략)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 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 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단계평가(연구 -----연차평가(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이하 같다) 및 최종평가(연구개 말한다. 이하 같다), 단계평가-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실시하 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 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차평가, 단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u>단계</u>
<u>평가</u>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
발과제를 보완・변경・중단하
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증액
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 지원을 할 수 있
다.

④ ~ ⑧ (생 략)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 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 를 실시할 때에는 연구개발과 제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 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⑧ (생 략)

③ <u>연차</u>
평가 및 단계평가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1
①
①
①
①
①